

## 【 입원지원서 작성안내문 】

- 채용공고문 '6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' 및 입원지원서 작성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 
관련 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오기재, 누락 등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원지원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전문의 바랍니다.  
- 문의처 : 채용 홈페이지 Q&A 게시판으로 문의

구분	항목	작성안내
1	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생월생일</b> : 출생년도는 제외하고 생월생일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예) 3월 1일</li> <li>· <b>연락처 및 e-mail</b> : 해당정보는 전형별 합격통보시 활용되며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입니다.</li> <li>· <b>병역사항</b> : 병역필/면제대상/비대상(여성)/임용일기준 전역예정자 또는 미필 중 택1</li> </ul>
2	가점 및 동점자 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보훈</b>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*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)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인정</li> <li>· <b>장애</b>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서 정한 등록장애인</li> <li>· <b>지역인재</b>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또는 이전지역인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, 중퇴한 자 또는 재학, 휴학 중인 자</li> <li>- (이전지역 인재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한 지역(충북, 충남, 대전, 세종)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</li> </ul> </li> <li>* <b>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"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" 참조</b></li> <li>· <b>청년</b> : 임용일(2022.1.1.)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</li> <li>· <b>여성과학기술인</b> :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</li> </ul> <p>※ 우대사항으로 인한 가점은 입원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점수가 부여되므로,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
3	교육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지원직무 관련</b>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<p>※ <b>수료증 또는 교육이수증을 제출 가능한 경우만 기재</b></p>
4	경력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지원직무 관련</b>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· 근무기간의 경우 0000-00-00 형식으로 기재합니다. (예: 2021-12-31)</li> </ul> <p>※ <b>경력사항은 ①경력(재직)증명서 ②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2가지 서류로 지원서에 기재한 기간 등을 모두 증빙 가능한 경우만 기재)</b></p>
5	자격/면허 및 어학성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지원직무 관련</b> 자격/면허 및 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<p>※ <b>자격/면허 및 어학성적의 경우, 원서접수 마감 전(2021.11.15.18시)까지 취득 완료하여 임용일(2022.1.1.)기준 유효할 경우만 기재</b></p> <p>※ <b>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</b></p>

## 참 고

##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

### <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>
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.경기.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.중퇴한 자 또는 재학.휴학 중인 자
- (이전지역 인재)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### < 비수도권 지방학교 >

####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.경기.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\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#### 예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 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.경기.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# 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.경기.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.경기.인천 지역대학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
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#### 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
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### < 이전 지역 학교 >

#### 가. 이전지역 학교

□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
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상의 "분교"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
(3) 「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
(4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
(5)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#### 나.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

(1)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
- ㉠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㉡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㉢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㉣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(2)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다.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(1)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

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(2)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비해당

